

의안번호	2203451
의 퇴 인	안규백의원
회 답 일	2024.9.20.
추계번호	24D339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회 군인권보호관과 그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2,300만원 등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5억 8,300만원(연평균 7억 1,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회 군인권보호관	723	696	708	721	734	3,583	7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둠(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 (군인권보호관의 임기 등)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제1항) 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등)	군인권보호관은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군인등의 기본권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군인기본권침해 및 군인등의 기본권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군인권보호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군인기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총괄, 종합 및 조정, 군인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이행 실태의 확인 및 평가, 군인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군인등의 기본권 상황에 관한 정기·불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그 밖에 군인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의무규정
4	안 제11조 (지원조직)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둠(제1항)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34조 (공무원 등의 파견)	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군인권보호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군인권보호관에 파견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	-
2	안 제7조 (군인권보호관의 임기 등)		
3	안 제6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등)	-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4	안 제11조 (지원조직)	○	-
5	안 제34조 (공무원 등의 파견)	-	현시점에서 파견공무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그에 따른 기본경비는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¹⁾은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두고 군인권보호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재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겸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있음
- 추계에서는 국회군인권보호관(차관급) 및 그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추계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 중 일부가 국회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으로 군인권보호국(3과,

1)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54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직원 22명)이 있음

-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면서, 기존부터 존재하던 1개 과에 2개 과를 신설하여 3개 과로 구성된 군인권보호국을 신설

[표 2]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 현황

(단위: 명)

부서명		계	국장	부서장	5급	6급	7급	9급	비고
군인권 보호국	군인권 보호총괄과	8	1	1	2	3	—	1	
	군인권 조사과	7	—	1	2	2	2	—	군인권보호관 신설 전부터 존재
	군인권 협력지원과	7	—	1	2	4	—	—	
합 계		22	1	3	11	15	9	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안과 연계하여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권보호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관련 조사대상에서 군을 제외하지 않고 있음²⁾
- 추계에서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된 2개 과를 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으로 이관하고, 1개 과는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에서는 2024년 국회각목명세서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7월)한 공무원인건비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³⁾을 적용하여 산정함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2%	2.1%	2.1%	2.1%	2.0%

- 군인권보호 관련 사업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비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회군인권보호관 및 지원조직 인건비 등

- 재정안에 따른 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 중 2개 과(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협력지원과) 15명을 국회로 이관하고, 1개 과를 신설하고 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회 군인권보호관(차관급) 및 지원조직 중 1개 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추계
 - 신설되는 1개 과는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등 총 7명으로 가정함

[표 3] 제정안에 따른 지원조직 인력(추정)

(단위: 명)

구분	합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관		순증인력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협력지원과	군인권조사과
3급	1	1	—	—
4급	3	1	1	1
5급	6	2	2	2
6급	9	3	4	2
7급	2	—	—	2
9급	1	1	—	—
계	22	8	7	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등) 군인권보호관(차관급)과 지원조직 순증인력 7명 등 총 8인의 인력증원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임⁴⁾

○ 공무원 보수는 2024년 국회 각목명세서를 참고⁵⁾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7월)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8.2%)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공무원 보수 중 기본연봉 및 봉급에 연동하는 수당은 최근 3년(2022~2024)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를 적용하고, 봉급에 연동하지 않는 수당(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⁶⁾을 적용하여 산출함

[표 4]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563	573	582	593	603	2,913
기관부담금	74	76	78	80	82	390
기본경비	46	47	48	49	49	239
자산취득비	40	0	0	0	0	40
합계	723	696	708	721	734	3,5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회 군인권보호관과 그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추

4) 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 전체 인력 22명 중 순증인력 7명과 군인권보호관을 포함 8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추계하며, 나머지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은 기존 인건비 등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5) 5급 이상은 기본연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6~9급은 봉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6)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4. 7.)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기관부담률	13.004%	13.114%	13.210%	13.305%	13.399%

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2,300만원 등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5억 8,300만원(연평균 7억 1,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회 군인권보호관	723	696	708	721	734	3,583	7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 중 2개 과를 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으로 이관하고 1개 과를 신설하고, 사업비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사업비 규모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신설되는 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 규모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